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331

제안년월일: 2022년 11월 21일
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5조에는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- 화학식을 국제 표준에 맞게 수정함(안 제2조제3호).
- 조문 내용을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함(안 제5조).
- 안 제5조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융자·보조 대상 및 절차를 수정함 (안 제6조).

3. 참고사항: 생 략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 중 "육불화황(SF6)"을 "육불화황(SF₆)"으로 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70조제2 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
- 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·조사·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
- 3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 치·교체
 - 4.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
 - 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·지원

- 6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
 - 7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융자 (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, 공공시설, 사회복지시설)
 - 8.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융자
 - 9.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
 - 10.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
 - 11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12. 기금의 운영·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 액 보전
 - 13. 기금의 운용 ·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14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)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제5조제2호의 사업: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·조사·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
- 2. 제5조제3호의 사업: 10%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 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

- 3. 제5조제4호의 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. 다만, 마목의 경우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민·시민단체·연구기관을 포함한다.
 - 가.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ㆍ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
 - 나.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
 - 다.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
 - 라. 신ㆍ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
 - 마.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
 - 바.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
 - 사. 신·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
 - 아.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
 - 자.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
 - 차. 빈곤층 에너지 지원
- 4. 제5조제5호의 사업: 5%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
- 5. 제5조제6호의 사업: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
-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 시가스사업자로 한다.
-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

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.

-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·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.
- ⑤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·한도액·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_	서울특별시_	(개정안과 같음)
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	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	
운용에 관한 조례	운용에 관한 조례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온실	제1조(목적)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가스 저감, 신・재생에너		
지 개발보급, 에너지이용		
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		
등을 촉진하기 위하여		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	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	
따라 서울특별시 <u>기후변화</u>	및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	
<u>기금</u> 을 설치하고, 그 운용	한 탄소중립・녹색성장	
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	<u>기본법」 기후대응기</u>	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 그</u>	
레이크(코)이) 이 크레세기 기	레이크 (코 이)	레이크 (코 시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	제2조(정의)	제2조(정의)
음 각 호와 같다.		
1. "기후변화"란 <u>「기상</u>	 1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	· 1. (개정안과 같음)
1. 기구단되 단 <u>기구</u> 6 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	1. <u>기구기기 네용를 기단</u> <u>탄소중립・녹색성장</u> 기본	1. (川る七年 年日)
변화를 말한다.	법 제2조제1호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2. (개정안과 같음)
3. <u>"온실가스"란 이산화탄</u>	3. <u>"온실가스"</u> 란 적외선 복사	3
소(CO ₂), 메탄(CH ₄),	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	
아산화질소(N ₂ O), 수	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	
소불화탄소(HFCs), 과	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	

불화탄소(PFCs), 육불 화황 및 그 밖에 「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 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 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 질을 말한다.

- 4. (생략)
- 5. "온실가스 배출권"이란

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
 법」 제42조제1항제1호
 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
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
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
 당 및 거래에 관한 법
 률」 제5조제1항제1호
 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
 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
 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
 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
 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
 다.

6. ~ 7. (생 략)

제2장 <u>서울특별시</u> <u>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</u> 운용 로서 이산화탄소(CO₂), 메 탄(CH₄), 이산화질소(N₂) O), 수소불화탄소(HFCs), 과불화탄소(PFCs), 육불화 황(SF6) 및 그 밖에 「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"을 말한다.
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------<u>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</u>

<u>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</u> 본법」 제8조-----

6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2장 <u>서울특별시</u> <u>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</u> <u>운용</u> 4. ~ 7. (개정안과 같음)

제2장 (개정안과 같음)

제3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	제3조(기금의 설치)	제3조 (개정안과 같음)
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		
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		
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		
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	<u>기후</u>	
<u>기후변화기금</u> (이하 "기금	대응기금	
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	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	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	제3조의2 (개정안과 같음)
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</u>	<u>2027년</u>	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<u>12월 31일</u>	
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		
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		
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		
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		
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	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	제5조(기금의 용도)	제5조(기금의 용도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
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	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	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<u><신 설></u>	11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	탄소중립 노색성장 기본
	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	법」제70조제2호부터 제7
	위한 산업・노동・지역	호까지의 사업
	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	2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
	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	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
<u><신 설></u>	12.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	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
	경제적・사회적 여건이	저감을 위한 연구、조사、
	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	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
	받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	3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

	일자리 전환・창출 지원	<u>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</u>
<u><신 설></u>	13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	및 기자재 설치、교체
	<u>녹색기술 연구개발 및</u>	4. 「에너지법」에 따른 신
	<u>인력 양성</u>	<u>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</u>
<u><신 설></u>	1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	용 보급 장려 및 빈곤층
	여 필요한 융자・투자	에너지 지원사업
	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	5.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76
	<u>용 지원</u>	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
<u><신 설></u>	1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	<u>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</u>
	교육・홍보	업비 융자、지원
<u><신 설></u>	<u>16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</u>	6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에
	제협력	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
<u><신 설></u>	17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	수 및 신규 건설
<u>11</u> . ~ <u>13</u> . (생 략)	<u>18</u> . ~ <u>20</u> . (현행 제11호부	7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
	터 제13호까지와 같음)	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
		시설 설치비 융자(도시가
		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, 공
		<u>공시설, 사회복지시설)</u>
		8.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
		정압기시설 교체비 융자
		9.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
		10.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
		11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		12. 기금의 운영 · 관리를
		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
		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		13. 기금의 운용 관리를
		위하여 필요한 사항
		14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
	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 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 는 자는 기금의 운영·관 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 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6조(융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

④ <u>제5조제19호</u>-----

(5)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)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5조제2호의 사업: 에 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 스 감축에 관한 연구·조사 ·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 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

2. 제5조제3호의 사업: 10%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 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 치사업을 시행하는 자

3. 제5조제4호의 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. 다 만. 마목의 경우 신ㆍ재생에 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 는 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 관을 포함한다.

<u>가. 신·재생에너지의 자원조</u> <u>사·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</u> 성

<u>나.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</u> <u>ㆍ개발 및 기술평가</u> 다.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

보의 수집 · 분석 및 제공 라. 신 · 재생에너지분야 기 <u>술지도 및 교육·홍보</u> 마. 신 재생에너지 시범사 업 및 보급사업 바. 신, 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사. 신 · 재생에너지관련 국 제협력 아.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.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 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차. 빈곤층 에너지 지원 4. 제5조제5호의 사업: 5%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 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 사업을 <u>시행하는 자</u> 5. 제5조제6호의 사업: 「집 단에너지사업법」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 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 는 자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「도시가스사업 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도

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

<u>제3장</u> <u>서울특별시</u> <u>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</u> 회의 설치 및 구성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기금의 운용・관리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
1. ~ 4. (생 략)

제3장 <u>서울특별시</u> <u>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</u> 회의 설치 및 구성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가스사업자로 한다.

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 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 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 업자로 한다.

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 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·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 다.

⑤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ㆍ한도액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.

제3장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 (개정안과 같음)